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제14-2판)

2022. 12. 21.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본 대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유입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수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반영 		
개정	공항	기존	→	변경
		(유증상자 양성 시)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유증상자 양성 시)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재택격리 입소시설* * 국내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경증 외국인 확진자
개정	항만	(유증상자 양성 시) 자택격리, 병원, 생활치료센터 이송 선박 내 격리		(유증상자 양성 시) 자택격리, 병원, 선박 내 격리, 재택격리 입소시설* * 국내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경증 외국인 확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 보고 삭제 – “검역소는 일일상황을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보고” 삭제 • 유증상자 검역 조사·조치 – (기존)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발생 통보 → (변경)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 혹은 공문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발생 통보 *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 이송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무증상·경증 확진자) 지자체 마련 재택 격리 입소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 통보 • 재검출자 증명 책임 – 증명자료 미지참 또는 본인확인 불가능한 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격리치료 등은 입국자 본인의 책임 		
항만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 단계 확진자 관리 방안 개정 – (기존) 내·외국인 확진자 시·도 연락담당관을 통해 병상 배정 요청 → (변경) 자가용 및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재택 치료 권고 *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외국인인 경우, 지자체 마련 재택격리 입소시설에 격리 		

목 차

I. 대응원칙	1
II. 사례정의	2
III.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4
2. 검역대응 흐름도	4
3. 입국검역	5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6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9
IV. 항만 검역대응 절차	10
1.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및 용어정의	10
2. 검역대응 흐름도	11
3. 검역조사	12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14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17
V.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18
VI.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22
VII. 접촉자 관리	26
VIII. 기타 행정사항	27

서식 및 부록

«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30
2.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31
3.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	32
4. <삭제>	34
4-1. <삭제>	35
5. 기초역학조사서	36
6. 격리통지서	37
7.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38
8. 검사의뢰 관리대장	39
9.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40
10.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41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42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43

«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44
2.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48
3.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57
4. 항만 입항 군용(軍用) 운송수단 검역절차	60

I. 대응원칙

- (법적근거) 코로나19는 '19년 12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대응함(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1호 가목, 질병청 고시, '22.4.25.)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
- (대응방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 절차 마련
 -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예정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항만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기본으로 따르되,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 등은 '코로나19 검역대응 FAQ' 참고

II. 사례정의 등

본 사례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정의

-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 '22. 3. 14. ~ 별도 안내시까지
-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 '22. 3. 14. ~ 별도 안내시까지
 -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 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가 판단할 수 있음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②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장기체류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 분류 정의

-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단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 B-1, B-2, C-1, C-3, C-4
 -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III.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22.9.3.~)

- 기내 탑승객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 기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발견 시 검역소에 통보
- 본인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어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현지에서 격리·치료하는 것을 권고함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별도 제출서류 없음)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에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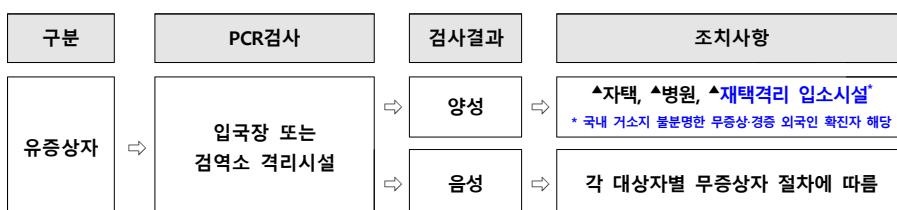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22.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2.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 무증상자



3. 입국검역

◆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고, 3일 이내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10.1.~)

◆ 큐코드 누리집 상 PCR 검사 등록 의무 중단(10.1.~)

◆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가. 입국검역 개요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구성) 입국자 발열 여부(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질문서 통한 건강상태 정보 확인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① (검역정보 확인)

- (Q-CODE 이용자)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 검역관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입국자 정보 확인

- (Q-CODE 미이용자) 입국장에서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상태정보를 Q-CODE에 입력하고, 스캔하여 입국자 건강상태 정보 확인
* Q-CODE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역 실시

○ (입국 후 검사) 검사희망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가능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비용 본인부담)

* 여권을 확인하여 내 · 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입국심사 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 해외입국자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 입국 후 PCR검사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 시, 항공권, 입국심사 확인증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방문

4. 유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유증상자 기준)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 발열(37.5°C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라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로 설정

-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

1.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

(기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

2.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

3. 입국장에서의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등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

**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은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기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 기내 승객 및 승무원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
- 기내 유증상자 발견 시 「검역법」 상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상에 적시^{*}하여 신고
- *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 별지 명세표에 유증상자 작성
- 유증상을 우선 하기하여 검역대에 인계, 검역소는 보건교육, 임시 격리, 검체채취 등 조치 실시

- (유증상자 검역조사) 증상자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 유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유증상자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등으로 이송
-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
 - * 관찰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
 - * 검역소 소재지 119 신고 고려
- 상태가 경증인 경우에는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함
 - *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철저 및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

[(참고) 중증도 분류기준]

*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참고

단계	정의	현행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중등증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위중증
8	사망(death)	

○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

- (검역관)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실)로 함께 이동

*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필요시 안면보호구, 가운, 레벨D 등 착용)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기초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기초역학조사[서식 5] 후 PCR검사 실시

·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유증상자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후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수행

*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 착용

○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자택, ▲병원 또는 ▲재택격리 입소시설로 이동 안내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미국 외교관(A1)·관용여권(A2)·주한미군(A3)) 소속부대에서 인계 후 PCR 검사 실시, 주한미군(A3)은 자체관리

5. 무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검역조사)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

- (무증상자 조치) 희망자에 한해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입국심사 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①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군부대에서 인계 후 자체 관리

② (단기체류외국인)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비용 본인부담)

IV.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및 용어정의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22.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 입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22.9.3.~)

- 여객선 선내 탑승객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및 유증상자 발견 시 검역소에 통보
- 본인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어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현지에서 7일간 격리·치료하는 것을 권고함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종단하고, 3일 이내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10.1.~)

◆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 하선 유형에 따른 항만 입항 인원 구분

-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 교대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출입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재승선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 (상륙허가자) 하선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출입국에 상륙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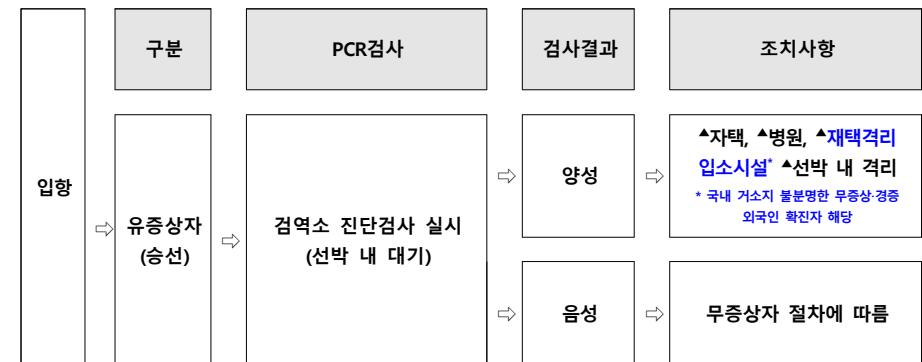
○ 선박 탑승 유형에 따른 항만 입항 인원 구분

- (선원)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선원법」에 따라 공인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 (전선 또는 편승 인원을 포함)
- (여객)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으면서 근로 제공 외의 목적으로 「해운법」 상 해상여객운송사업 해당 선박에 탑승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
- (기타탑승자) 선원과 여객을 제외한 인원

※ 기존 검역 대응 지침 상 '승객'으로 표현된 인원을 '기타탑승자'로 적용함

2.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 유증상자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입국절차(하선자) 진행

□ 무증상자



3. 검역조사

가. 승선·비승선 검역

- (승선검역)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검역관이 승선하여 선박 내 전 인원의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 조사 실시

※ 검역관은 승선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

◆ 승선검역 대상[서식 7]

-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선박
- ② 입항 전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선박
- ③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④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

- (비승선 검역) 승선검역 외의 경우, 서류심사 또는 「검역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조사생략 선박의 경우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부록6 절차에 따름(관계부처 간 별도협의)

-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시 ‘불합격’ 처리 후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나. 하선절차

- ① (검역정보 확인)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여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을 원칙

* 선사나 해운대리점을 통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

- ② (증상분류)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체크 결과 증상 분류

- ③ (입국 후 검사) 검사희망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가능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비용 본인부담)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입국심사 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지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 해외입항자(항만)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 입국 후 PCR검사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 시, 승·하선 공인 서류 또는 하선일자가 적힌 선원명부 등 해외입국자(항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방문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유증상자 기준) 발열(37.5°C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모든 하선자 대상)

○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

가. 선박 보건상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
(선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

나.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

다. 입국장에서의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등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

**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

○ (선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선내 유증상자 발견 시 「검역법」

상 선박 보건상태신고서 상에 적시*하여 신고

*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후면에 기재

- (여객선) 유증상자를 우선 하선하여 검역소에 인계, 검역소는 보건 교육,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등 조치

○ (유증상자 검역조사) 증상 분류 후 임시 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

- 유증상자 분류 후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채취

* 유증상자는 검역조사 중 마스크 상시 착용

- 상태가 경증인 경우에는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함

*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철저 및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

※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필요시,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병상 배정 요청)

[참고] 중증도 분류기준]

*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참고

단계	정의	현행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8	사망(death)	사망

○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

- (검역관)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실)로 함께 이동

*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필요시 안면보호구, 가운, 레벨D 등 착용)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기초역학조사[서식 5] 후 PCR검사 실시

*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 착용

○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또는 ▲해당 선박 내 격리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하역작업 등) 유증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및 선원

교대 등 가능

5. 무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검역조사) 발열체크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

- (무증상자 검역조치) 하선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입국심사 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
국인인지 여부 구분 가능(본인 입증 책임)

- (무증상자 검사장소) 하선유형에 따라 검사장소가 다름

- ①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 · 재승선내국인)

-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 ②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 · 상륙허가자)

-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비용 본인부담)

V.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 ▷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
 -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단,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 ▷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가.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

○ (검체채취 장소)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

- * 검역조사실, 격리시설(실), 선내 등

○ (검체종류) 상기도 검체(권장),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

- * [부록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 참조

-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 채취

- *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

- (하기도 검체) 가래가 있는 경우 채취(가래 유도 금지)

○ (개인보호구)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 D) 착용[부록 3]

※ 검체 채취시마다 장갑을 교체하고 알콜로 소독

○ (검사의뢰) 검역소는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공문 등)

- * 검체 의뢰시 검사의뢰 관리대장[서식 8]을 작성하여 질병대응센터로 송부
- ** 관할 질병대응센터에서 해외출입국관리팀(메모보고)으로 실적 송부

○ (검사수행)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검사 수행(필요시 수탁기관 활용)[서식 9]

- *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결과회신) 질병대응센터는 검역소로 진단검사 결과 회신(공문 등)

○ (양성 확인)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보고(유선보고 등)

- * 단, 검역소에서 수탁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양성 확인 시 검역소
에서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으로 보고

- (양성보고) 양성인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며,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최초 양성 판정시)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 후 최초 양성 판정 시 방대본 진단총괄팀으로 잔여검체 송부하여 재검사 후 최종결과 판정

나.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임시 격리

※ 유증상자 등 감염병의심자 중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에서 임시격리 시 적용하며, 격리시설 운영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에 따름

○ (격리 장소)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및 지정 임시격리시설

- * 선박 하선자의 경우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선내에서 대기하며, 선사나 해운대리점 관리자의 인솔하에 마스크 등 착용 후 이동
- 임시격리 장소로 이송 시 검역관은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마스크 착용 유지함
- 해당 검역소에서 격리관찰시설(실)이 부족할 경우 인근 검역소 시설 공동 이용(격리시설 운영 인력 등 견역소간 협력 운영)
- 격리대상자 다수 발생으로 자체 격리시설 수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자체,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 (검역관) 각 검역소 임시격리 장소로 대상자와 함께 이동 및 해외 출입국관리팀으로 격리대상자 발생 메모보고(기초역학조사서 파일 첨부)

- * 다수의 격리대상자 발생 시 격리대상자 관리대장[서식 10] 또는 일일상황보고로 갈음
- (격리관찰자)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내 임시 격리 조치
 -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격리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격리병상 배정요청 후 이송
 - ** 격리대상자에게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배부[부록 4]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등 보건교육 실시

- (검사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입국후 및 하선전 PCR 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검사 양성) 최초 인지한 격리소는 재택치료* 안내 또는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병원(중증 이상) 이송** (격리해제 등 관리는 이송한 시설규정에 따름)
 - * 재택치료는 국내에 거주지(또는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세부적인 확진자 이송 및 격리 절차는 [VI.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에 따름](#)

- (검사 미결정) 추가검사 실시하여, 미결정 2회 시 역학조사관(또는 공중보건의)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여부 결정
 - * 사례정의 및 판정 등은 [VIII. 기타 행정사항 → 재검출자 사례 참고](#)

○ (검사결과 보고)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총괄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발지 등) 및 결과 보고

- * 시스템 구축 전까지 별도 송부하는 양식으로 보고 수행

※ 검사확인서[서식 11]는 내국인에 한해 요청시 발급 가능, 외국인은 발급 불가

VI.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 (환자 발생 보고)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
* 건강상태질문서, 기초역학조사서 첨부

- (조치결과) 확진환자 이송(병상배정 포함) 및 접촉자 조사 결과 등
메모보고에 의견달기로 공유

-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또는 공문)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에 환자 발생 통보
* 확진자 탑승 선박이 회항 또는 자진출항하거나 확진자를 해당 선박 내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통보 불요

※ 국내 거소지가 없는(혹은 불분명한) 외국인의 경우,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 이송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무증상·경증 확진자>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 격리 입소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단, 통보 절차는 검역소 소재 보건소와 협의 가능

- (관련 자료 공유) 확진자의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초역학조사서는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FAX 또는 공문 전송

- (통보방법) 프로그램 내 '비고(특이사항)'란에 "①검역소명, ②입국일, ③방문국가, ④국적, ⑤체류기간" 등 작성 후 통보

2. 격리병상 배정 요청

- (검역관) 재택치료가 불가한 확진자의 경우, 시·도 연락담당관으로 병상 배정 요청, 이송 담당관 연락처 공유
* 각 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기초역학조사서 사진 전송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임시 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

- (시·도 연락담당관) 지역 내 병상 배정여부 확인 및 해당시설에 병상(실) 가동준비 요청, 병상 배정 결과 및 담당자 번호 검역소에 공유

< 검역단계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 >

○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

- (인천공항)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배정 요청

- * 다만, 확진자 중 급격한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거점)전담병원에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서울, 인천, 경기 지역 환자일 경우에는 '수도권 긴급대응반'에 공유)
** 중수본-1994호(2021.1.18.) 참고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임시 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

※ (인천공항 확진자 이송)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인천소방본부에서, 그 외 지역의 이송은 시·도에서 담당

- (기타 검역소) 검역소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 검역소 소재 시·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

○ 무증상·경증 확진자

-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자가용 및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재택 치료 원칙
 - * 국내 거소지가 없는(혹은 불분명한) 입국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 격리(유료)

3. 확진 환자 이송 및 인계

가. 확진자 이송

-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 자차 및 방역택시(비용 본인부담) 이용하여 귀가
- (재택치료 불가자 이송) 병원에 확진자 이송 및 도착시점 유선알림
 -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KF94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Level D 수준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재택치료 불가자 인계) 이송요원은 병원 도착 시 의료진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및 확진환자 인계(의료진에게 환자 건강상태를 설명)

※ 검역소 구급차가 없을 경우, 지원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구급차) 이송요원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인계 및 환자 상태 설명

◆ 확진자 이송수단 및 방역수칙 안내

- (이송수단) 검역소·보건소·119·민간운영 구급차 또는 개인차량(본인·동거가족 운전) 및 방역(일반) 택시 이용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송
 - *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자제
- (방역수칙) KF94 동급 이상이 마스크 및 장갑 착용, 환자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운전시 창문개방,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선금지
 - * 개인차량,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제한함

나.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항만)

- (조치사항)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외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 *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까지
 - ** 선내 격리중 증상 악화 등 필요시 병원진료 가능(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확진자임을 알리고 진료가능 여부 문의)
- (확진자 하선)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하선 가능(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 불급한 상록은 제한)
- (하역작업 등) 선박 소독 완료 및 동승선원 PCR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및 선원교대 등 가능
- (추가검사)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 불요

◆ 확진자 발생 선박 입항 시 조치사항(확진자가 선박 내 탑승)

○ 검역소장 판단하에 진단검사, 격리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VII.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진단검사 등 고강도 입국자 관리 및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역량을 고려하여 검역단계 접촉자 조사 체계 변경
 - (공항) 기내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
 - (항만) 국내 접촉자(항만근로자 등)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동승선원에 대한 조사는 지속)
- ※ 단, 신규 변이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재개 가능

2. 확진자 발생 선박 내 동승선원 및 운송수단 관리

- (동승선원 관리) 확진자 발생 선박에 손소독제·마스크·장갑 등을 배포, 동승 선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함.
(단, 작업 및 선원 교대없이 국외출항을 선사 등에서 원하는 경우 PCR검사 생략 가능)
- (운송수단 관리)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
 - ※ 확진자 조치 및 선박 소독 완료, 동승 선원 접촉자 중 유증상자 조사 결과 (PCR검사결과 음성) 확인 이후 선박 이동금지 해제(확진자가 선내 격리 중인 경우는 마지막 확진자의 격리해제 이후 이동금지 해제 가능)
 - ※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소독 완료한 경우 재차 소독명령을 하지 않아도 됨
- (하역작업 등) 선박 소독, 확진자 이송 후 선원과 항만근로자 간 접촉을 삼가고, 작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국외출항) 확진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거나 미결정자가 탑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선사 등에서 국외출항(회항 등)을 희망할 경우 출항 시 IHR 통보*
 - * 국제협력담당관 및 해외출입국관리팀에 메모보고로 해당 선원 성명(영문명), 국적, 여권번호, 확진자 발생일, 차항지 도착예정일 등 관련 정보 공유

VIII. 기타 행정사항

- (행정조치)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 이동금지 등 조치, 소독이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조요청)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공·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송환자 이송 및 입국수속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
 - 격리로 인한 항공권 변경 등 요청 시 관련업무는 항공사와 협의
- (검사결과 확인) 격리병원으로 이송 시 PCR검사 결과 확인 절차는 해당 병원과 사전협의
- (이송수단 등 소독) 공·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구역 및 격리시설(실),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 및 확인
 - 코로나19 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및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소독 실시
- (폐기물 처리) 환자 이송 시 사용한 개인보호복은 탈의 후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격리시설(실)의 경우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폐기물 처리
- (검역관/지원인력 감염주의) 현장검역, 검체채취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위생관리 철저 수행
 - **검역인력** : 의사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시 검역소장 보고 후 진단검사 실시,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권고
 - **검역지원인력*** : 해당기관 담당자가 개인별 건강관리, 유증상자·접촉자 등 확인 시 담당검역관에게 신고
- * 검역지원인력에 대한 진단검사는 유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후 수행하고, 무증상의 경우에도 지원해제시 원 소속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공·항·만 상주기관 직원 감염관리

-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발생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

○ (재검출자 사례) 국내·외 기학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가 입국 또는 상륙 후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검사 또는 RAT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 (사례판정)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

- 판정 주체 : 역학조사관 또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공중보건의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를 통해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① 검사방법은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또는 RAT 검사(전문가용)이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것
 - ②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③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 증명자료 미지참 또는 본인확인 불가능한 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격리치료 등은 입국자 본인의 책임

- (환자관리) 단순 재검출의 경우에는 ‘음성’과 동일한 조치, 재감염 추정사례의 경우에는 ‘양성’과 동일하게 조치함

* 미결정자가 단순재검출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보고·통보) 확진자 통보 시 사례판정 결과 포함

○ 제출서류별 보관기관

- 특별검역신고서 : 1개월

*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서식 1**건강상태질문서**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4.>

건강상태 질문서

성명	성별	[]남	[]여
(앞쪽)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도착 연월일		
선박·항공기· 열차·자동차명	좌석번호		
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또는 한국 내 연락처)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1)	2)	3)	4)

최근 21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발열	[]오한	[]두통	[]인후통	[]콧물
[]기침	[]호흡곤란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발진
[]황달	[]의식저하	[]점막 지속 출혈 * 눈, 코, 입 등	[]그 밖의 증상()	

위의 증상 중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 중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증상 관련 약 복용	[]현지 병원 방문	[]동물 접촉
해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없음"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증상 없음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은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인은 위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148mm×210mm[황색지(80g/m²)]

서식 2**검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검역소→법무부]****코로나19 검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불허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위 승객은 검역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입국불허를 요청합니다.

요청사유

- ① 연락처 현장수신 확인 불가 []
- ② 기타 사유 []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국립 **검역소장** (직인)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앞면 >

특별검역 신고서
Travel Record Declaration

성명 Name(姓名)	성 이름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出生日期)
국적 Nationality(国籍)	항공기·선박명 Flight·Ship No. (航空·船舶)	
여권번호 Passport No.(护照号码)	도착 연월일 Date of Arrival(到达日期)	
입국일자	기 확진일자	

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실제 거주할 주소를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
 ※ Please write current residential address(full address). (请填写在韩实际居住的详细地址。)

휴대 전화번호 Mobile Phone No.(手机号码)	전자우편주소 E- Mail(电子邮件)
--------------------------------	----------------------

최근 14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14 days prior to arrival.
 (请填写过去十四天之内停留过的国家。)

출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Please list the country you departed.)
 请填写出发国家名称。

본 신고서 작성은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information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000,000 KRW.

若回避或虚假填写本调查表，依据「检疫法」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规定，可被处以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
 韩元以下的罚款。

작성일 2022 년 월 일
 Date (日期) (MM/DD/YYYY)

작성인 (서명 또는 인)
 Completed by (签字)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國立檢疫所長 敬啟)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Quarantine-covid19 defence(Q-CODE) system
Guideline



< 한국어 >

< English >

▷ **이용대상 : 공항 국제선 입국자**

USE TARGET : Arriving at International Airport from overseas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용하여 입국 전에 검역
 정보를 입력하면 입국 후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시 발급받은 QR코드를 검역
 관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ssengers entering Korea from overseas can promptly receive the quarantine service by inputting
 their quarantine information using the Q-Code before entry.

Please present your QR code issued upon entry to the quarantine officer.

* 항만은 향후 확대 예정(with future plans of extending to ports)

서식 5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서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1.4 국적	<input type="checkbox"/> 국내 <input type="checkbox"/> 국외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보호자)	- -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2. 발생지역 여행력 (해당사항에 □ 표시 또는 기재)

2.1 최근 14일간 방문 지역 및 기간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2 여행 목적	<input type="checkbox"/> 관광 <input type="checkbox"/> 업무(출장) <input type="checkbox"/> 해외근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2.3 입국 시 경유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1. 입국시 경유지	입국 경로: 항공편/선박명: 경유지 공항 밖 출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출입함 (출입한 공항) 공항 밖 체류시간: <input type="checkbox"/> 출입안함
2.4 입국 일시	년 월 일 시 항공편/선박명 ()

3. 임상증상 (해당사항에 □ 표시 또는 기재)

3.1 최초증상	<input type="checkbox"/> 발열(주피리호소 미안欠발열)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증상	<input type="checkbox"/> 비호흡기 증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증상
3.1.1. 발현 일시	월 일부터	월 일부터	월 일부터	월 일부터
3.1.2. 증상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주관적 호소 <input type="checkbox"/> 미인지 발열 (체온: 1차 - °C 2차 - °C 3차 - °C)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기침 <input type="checkbox"/> 기래 <input type="checkbox"/> 인후통 <input type="checkbox"/> 호흡곤란	<input type="checkbox"/> 두통 <input type="checkbox"/> 근육통 <input type="checkbox"/> 오한 <input type="checkbox"/> 콧물/코막힘 <input type="checkbox"/> 후각저하(후각상실) <input type="checkbox"/> 미각저하(미각상실)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복통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3.2 증상 소실 여부	<input type="checkbox"/> 증상소실 <input type="checkbox"/>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input type="checkbox"/> 증상소실 <input type="checkbox"/>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input type="checkbox"/> 증상소실 <input type="checkbox"/>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input type="checkbox"/> 증상소실 <input type="checkbox"/>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3.3 해열제 복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마지막 복용시간: 월 일 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4 흡연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5 기저 질환(질병력)	<input type="checkbox"/> 예 (기저질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6 입신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주)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7 의료기관 진단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급성호흡곤란증후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흥부방사선촬영: <input type="checkbox"/> 예 (소견:)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역학적 연관성

4.1 동반자	<input type="checkbox"/> 단독(1인) <input type="checkbox"/> 2인 이상 여행(가족, 업무 등) (동행자: 명, 관계)
4.2 감염위험요인 (발병일로부터 14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확진환자 접촉 <input type="checkbox"/> 금성호흡기증상자(발열, 기침, 폐렴 등)와의 접촉 <input type="checkbox"/> 협진의료기관 방문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PCR / RAT 검사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력(차후, 백신종류)
4.3 과거 코로나19 확진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최초확진일: 년 월 일

중앙역학조사반 작성란

사례분류	<input type="checkbox"/> 확진환자 <input type="checkbox"/> 감염병 의심자 <input type="checkbox"/> 시례 '미해당'	입상증상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발열+호흡기증상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증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역학적 연관성 <input type="checkbox"/> 해외방문 () <input type="checkbox"/> 협진환자 접촉		
검역소 조치사항(증복기)	<input type="checkbox"/> 시설 격리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input type="checkbox"/> 보건교육		
검체채취 구분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채취 <input type="checkbox"/> 검역소 격리시설 검체채취 <input type="checkbox"/> 검역소 내 검체채취 <input type="checkbox"/> 기타()		
담당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일시	년 월 일 시

서식 6

격리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12. 30.>

[] 입원 · [] 격리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입원 · 격리 사유	
입원 · 격리 내용	입원일 · 격리시행일 입원기간 · 격리기간
입원 · 격리 장소	[] 병원 · 의원() [] 자택 [] 시설()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7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 점검 항목

순서	점검 항목	검역조사 방법 분류
①	선내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승선검역
②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	승선검역
③	선박위생관리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승선검역
④	기타 검역소장이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선박 * 마스크 및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여부 고려 ※ 도선사 등 '검역 전 승선허가자'는 예외	승선검역

- 검역조사 방법

- (승선검역) ①, ②, ③, ④
- (전자검역) '①' ~ '④' 중 전부 "미해당" 인 경우

□ 점검 시점 : 입항 전 또는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식 8

검사의뢰 관리대장 양식(엑셀작성)

* 항후 비용지급의 근거로 활용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히 기재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작성(비고에 여권번호 기재)

연 번	의뢰 일	성 (Summa me)	이름 (Givenna 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운송 수단명	검체 종류	의뢰기관 명	판정결 과	판정결 통보일	인 수자	인 제자	비 고
(예) 20 20- 03- 01	홍	길동	REPUBLIC OF KOREA	yymm dd	상기도 또는 하기도	양성 또는 음성	2020-03-02						
(설명) yyyy - m m-d d 형식 유지		여권에 영 시된 공식 적인 국적 (영문)으 로 기재 -예 시 /REPUBLIC OF KOREA(o) 대한민국 (x) 한국(x) South Korea(X)	성명 작성 - 내국인은 "한글명"으로 작성 -외국인은여권에 명시된 "영문명"으로써 어쓰기일치하게 작성	주민번 호 앞자 리 형식 (yymm dd)으로 6자리 기재	1명이상·하 기도2건검사 했을경우, 살 _하기도 각각 분리하여 작 성 (셀추가하여 2줄로작성) - 구인두, 객담, 구, 비, 객 등으 로 나열 표 기 금지	미결정(inde terminate) 을 데 이터 에서 삭 제	yyyy- mm-d 형식유 지						

서식 9**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 해당 서식은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으로,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검사 의뢰시,
해당기관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의뢰 필요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9. 11.>

() 검체 시험의뢰서			처리 기간	
의뢰기관	의료기관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환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또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 별
	발병일	검체채취일		
검체 종류(수량)				
시험항목				
검체 채취 구분 (1차 또는 2차)				
담당의사소견서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첨부자료 1. 검사대상물 2.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유의사항				
1.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확인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체 종류(수량)란에는 검체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액(2㎕)]				
처리 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검사 → 결제 → 성적서 발급				
의뢰인				
질병관리청(담당부서) 210mm×297mm[백성지(80g/m ²) 또는 중질지(80g/m ²)]				

- 40 -

서식 10**격리대상자 관리대장****격리대상자 관리 대장**

NO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선(기) 명	체류지역 (기간)	주소	입실시 증상 (시작일)	입실일	퇴실일	격리실 NO.	이송현황
	홍길동(남) (1980.1.1)	KOREA	DONG-A (CHINA)	중국(7일)		발열, 인후통 (2018.1.1)	1.10	1.20	1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신청인	성명		국적	
	생년월일		운송수단명	
	주소			

■ 검체 채취

검체번호	검체 채취일	검체 채취자	검체 종류	채취 목적	비고

위 사람의
(검체) 에 대한
(병명)
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결과

검사항목	최종결과	결과 판정일	비고

* 이 확인서는 본인 검사결과 확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립OO검역소장 직인

- 42 -

서식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순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상세주소	접촉자구분	격리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작업장명 (학교명)	최종접촉일	의문사항부
	띄어쓰기 금지	생년월일 년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등록 수사기관 입력 (예시 : 20160905)	1:남 2:여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 시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		01[의료진] 02[의료진 기타] 03[환자] 04[가족] 05[동료] 06[기타]	1[격리안함] 2[격리해제] 3[자가격리] 4[병원격리] 5[코호트 격리]	Y : 내국인 N : 외국인 반드시 국적입력	내국인 항목 'N' 선택 시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숫자만 입력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Y : 예 N : 아니오
1	홍OO	197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1[의료진]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OO병원	20150630	Y
2	홍OO	19710102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OO학교	20150630	N
3	MOO	200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2[의료진 기타]	3[자가격리]	N	중국	0101234 1234	0212341 234	OO기업	20150630	N
4	홍OO	20010103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무직	20150630	N

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참고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단, 선내 격리 및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1) 검체종류

▶ 상기도 검체(권장),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자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도	▶ 비인두도말물 ▶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로 대체
2	하기도	▶ 가래 ▶ (용기) : 멸균 50ml 투브 ▶ (검체량) : 3ml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가래 유도 금지(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성이 있으므로,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

*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 단순 통증/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

- (상기도 검체) 면봉을 이용하여 상기도 검체를 채취하고,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11]와 함께 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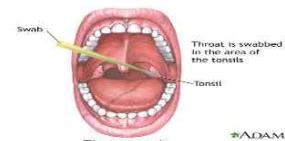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뺨 안쪽, 혀 뿌리 등이 아닌, 혀를 누르고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되며,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채취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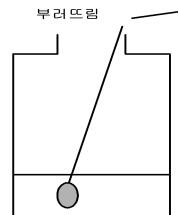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C)에 보관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C 유지)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가래 채취 방법]



2) 검체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곁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곁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3중 포장용기(예시)]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다. 주의 사항

-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진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2. 검사 의뢰

- (검역소) 검체의뢰 관리대장[서식 10]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 *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체 시험의뢰서[서식11] 작성,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해당기관 서식 사용
- (검역소) 검체채취 후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3.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담당

- (질병대응센터에서 검사할 경우) 검역소 담당자나 검체운송기관이 질병대응센터로 운송
- (수탁기관에서 검사할 경우) 검역소 담당자나 수탁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과 질병대응센터로 상황보고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C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C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청)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 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설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4. 검사 기관

- ◆ 기관에서 실시한 확진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청과 2종 확인 필요 (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검역소에서 의뢰한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

5. 검사 결과 보고

-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 및 방대본 진단총괄팀, 해외출입국 관리팀으로 검사결과 통보(메모, 유선)
 - 검사결과는 검역관을 통해 대상자(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통보 및 설명

▶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로 당일 보고
- 재검 필요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지침」과 「COVID-19 검사 Q&A」 최신판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정

▶ 해당 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초 검사에서 미결정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

부록 2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적용 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주요 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간호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 (Glove)	접촉	-손 오염 방지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파우더 알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 (Coverall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덧신 (Shoe covers)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뿐	-신발덮개 대신 착용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모자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뿐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뿐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 의심/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 (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¹⁾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검역	검역(검역조사)		●		●	
	검역(역학조사)		●		●	●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²⁾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³⁾		(선택 사용 가능)	●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⁴⁾⁵⁾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	
장례	시신 접촉		●		●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			●	
청소·소독	청소 · 소독 ⁶⁾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1)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 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2)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3) 겸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4)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
5) 병실, 구급차 등 청소·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4종	전신 보호복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	-
	PAPR(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	김서림방지 및 극寒 방지 코팅 처리
전신 ·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발목 높이의 미끄럼지 않은 재질
	일회용 긴팔가운/앞치마		필요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2.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을 입는다.
		
4.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6.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8. 장갑을 끼고 웃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

		
1. 장갑을 벗는다.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베린다.		2.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		4. 손 위생을 시행한다.
		
5.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	6. 손 위생을 시행한다.	7. 마스크를 제거한다.
		
8. 손 위생을 시행한다.	9. 속장갑(착용한 경우)을 제거 한다.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원칙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 착용 후 오염, 과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간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바로 버림

부록 3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안내문

1. 이곳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입니다.
2. 감염병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감염병이 아니라면 보건교육 후 귀가하게 됩니다.
3. 검역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외부 출입을 금합니다.
4. 식사는 퇴실 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5. 검역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 이 격리시설은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8. 다른 입실자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검역관에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안전 수칙

1.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관찰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uidelines for Quarantine Subjects

1. This is a **quarantine facility**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2. Wait here until your **infectious disease test results have been verified**.
※ Patients testing positive for infectious disease will be **transferred to a designated hospital for treatment**, while patients testing negative will be able to go **home following a class on public health education**.
3. Patients are prohibited from going outside until a quarantine officer provides notification of test results.
4. Free meals are provided until leaving this facility.
5. For required assistance from a quarantine officer, please **call an officer by using one of the facility phones**.
6. Please be careful not to fall from the bed.
7. This facility is a **non-smoking area**. Please do not smoke inside the building.
8. Please keep the noise level down out of respect for other patients in the facility.
9. Please notify a quarantine officer upon the worsening of **fevers, coughing, breathing difficulties, and other symptoms**.

Health & Safety Rules

1. Please pay particular attention to **personal hygiene** by thoroughly washing and disinfecting hands.
2. If experiencing a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e.g. coughing, sore throat, and runny nose, please **wear a mask at all times** while inside the monitoring room.

隔离者须知

1. 这里是韩国国立检疫所**隔离室**。
2. 在**传染病检查结果出来前**, 需在此等待。
※ 若确诊为传染病则**移送至指定医院接受治疗**, 若未感染传染病则接受**保健教育后即可回家**。
3. 在检疫官通知检查结果之前, 禁止外出。
4. 在隔离室期间, 免费提供饮食。
5. 如需检疫官的帮助, 请**使用提供的电话进行呼叫**。
6. 请注意不要跌落至床下。
7. 此隔离室为**禁烟区域**, 请勿在建筑物内吸烟。
8. 请不要发出噪音打扰他人。
9. 若**发热、咳嗽、呼吸困难等症状恶化**, 请告知检疫官。

健康安全守则

1. 务必注意洗手、手部消毒等**个人卫生**。
2. 若有发热和呼吸困难症状(咳嗽、嗓子疼、流鼻涕等), 务必随时在**观察室内佩戴口罩**。

군용(軍用) 운송수단의 경우, 입항목적 및 관리주체가 명확함에 따라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입국자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

* 본 절차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시 공문 등으로 사전 안내

* 미해군 운송수단 대상 검역절차는 미측과 협의완료 후 반영 예정

① 한국항에 들어오기 전

- (입항전 건강확인) 발열체크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여 증상 분류
- (검역신고)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에 들어오기 24시간전에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대리점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가능)

② 한국항에 들어온 후: 검역감염병 환자 유무에 따라 절차 구분

구 분	① 검역조사 일부 생략 시	② 승선검역 시
조건	코로나19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사망자가 없다고 통보한 경우	코로나19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사망자가 있다고 통보한 경우
입항 전 신고방법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제출 (선박종류를 군용 운송수단으로 신고)	좌동
입항 전 제출 서류	건강상태질문서	좌동
입항 후 제출서류	없 음	① 승무원 및 승객 명부 ② 건강상태질문서 ③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검역방법	서류 확인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한 검역조사	서류 확인 및 검역관이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

* 군용 운송수단이나 선박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군 등에서 검역소로 증빙서류 제출(공문)

- ① (검역조사 일부 생략 시) 관할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 사망자와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고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은 다음의 절차에 따름 (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확인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검역조사는 생략가능(검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 검역조사 생략 신청은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건강상태질문서 제출로 갈음
-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로 확인

* 유증상자가 없는 경우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검역소장은 제출 받은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후 검역조사 생략

- ② (승선검역 시) 관할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은 다음의 절차에 따름(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법 제12조의4제3항)

- 감염병의 국내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검역관이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검역조사** 실시(검역법 제12조의4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5)
- * 검역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탑승인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유증상자 및 접촉자에 대한 PCR검사 실시

-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 시 관할 검역소장에게 승무원·승객 명부,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 선박보건상태신고서 제출
- * 선박 내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의사가 대표로 선내 모든 승객·승무원의 건강 확인서 제출 가능

③ 하선자 증상별 관리

○ (유증상자)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결과 하선자(상륙 포함)

증 유증상자는 PCR검사 등 실시

* 불요불급한 하선 제한, 국방부(해군 등) 관리 하 군사 보안구역 내 일정공간에서만 머무르는 경우, 입국심사 또는 상륙허기를 받지 않으므로 하선으로 보지 않음(특별입국절차, PCR검사 미실시)

- (검사절차) 검역소 인력 부족시 검체는 함정 내 의료진(또는 해군 등)이 채취하며, 검체에 대한 PCR검사는 검역소에서 수행(수탁 등)

* 운송수단 내에서 PCR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검사 후 검역소로 결과 통보

○ (무증상자) 하선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 (특별검역신고서) 관리주체가 명확함에 따라 생략 가능

④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음성'인 경우) 하선 허용 및 검역확인증 발급

○ ('양성'인 경우) 확진자는 재택, 병원 이송

* 국방부 등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격리시설도 가능

※ 재택치료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및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름

- (확진자) 재택치료 불가 시 지자체에 병상배정 협조요청(검역소), 확진자 이송(국방부, 해군 등)

- (접촉자) 확진자의 접촉자는 국방부(해군 등) 관리 하 10일간 수동감시

※ 군에서 역학조사 시,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범위 및 재검출자 판단 가능

- (소독명령) 검역소장이 소독명령 및 이동금지 조치 시행

* 소독완료 후 검역소장에게 소독결과보고서(소독업무대행자) 제출시 이동금지 해제

** 소독업무대행자가 아닌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소유자·관리자가 소독을 하는 경우
소독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르며, 소독
결과는 사용약물, 소독방법, 소독일시 등을 포함하여 자료제출(별도 양식 없음)

- (하역 등 작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 작업 가능

○ (확진자 이송 불가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검역소장은 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 확진자 격리기간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까지

※ 예) 4월1일 검체채취한 경우, 4월7일 자정(24시)까지 격리

- (확진자 하선)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하선 가능(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 불급한 상륙은 제한)

*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불요